

# COVID-19에 관한 DFEH 의료 정보



# FAQ

신형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에 의한 호흡기 질환의 대유행이 캘리포니아와 미국에서 확인되었습니다. 2020년 3월 4일, Newsom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대유행 상황에서 캘리포니아는 유례없고 기하급수적인 COVID-19 케이스 급증을 경험하였고 이는 의료진과 기타 의료 자원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23일,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CDPH)는 [전체 시설 대상 서한\(All Facilities Letter, AFL 20-38.5\)](#)을 발표하고 의료 시설에서 “방문객 금지” 정책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시기와 상황에 관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2020년 12월 28일, CDPH는 두 번째 [전체 시설 대상 서한\(AFL 20-91\)](#)을 발표하고 특정 의료 시설에 의료 배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의료 관리 및 치료를 우선순위를 정하고 할당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 공공 위기 관리 연속성(public crisis care continuum) 정책을 개발 및 수립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의료 시설은 CDPH 및 기타 공중 보건 당국의 최신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동시에, 의료 기관은 반드시 차별 및 괴롭힘을 금지하는 해당 주 및 연방 시민권 법도 준수해야 합니다. DFEH는 의료 시설에 방문 위기 관리 정책을 개발 및 이행하면서 시민권 법을 유지할 의무를 상기시키기 위해 이 지침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한정되며 기존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것과 별도의 권리나 의무를 창출하지 않습니다.

## ■ COVID-19에 관한 DFEH 의료 정보

### 일반 정보

#### ■ 대유행 중에 시민권 법은 효력이 있습니까?

예. 대유행 중에도 주 및 연방 시민권 법은 효력이 있으며 의료 제공자가 보호 대상 특성을 근거로 개인을 차별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금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Unruh 시민권 법령(민법 51조) 및 정부 법전(Government Code) 11135조에서 병원 및 기타 의료 시설 내 차별 금지 보호 조치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Unruh 시민권 법령은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사업체에 적용되며 연방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의 보호 조치를 통합하고, 정부 법전 11135조는 주 자금 제공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최소한 ADA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주 시민권 법은 주 또는 주 자금 수혜자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업체,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 보호 대상 특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괴롭히거나 불평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캘리포니아는 2020년 3월 30일에 [지침](#)을 발표해 의료 제공자에게 모든 사람은 – 의료 클리닉 및 병원을 포함해 – 모든 사업 시설 및 공공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성별, 인종, 피부색, 종교, 혈통, 국적, 장애, 의학적 상태, 유전 정보, 결혼 상태, 성적 지향성, 시민권, 1차 언어 또는 이민 상태와 관계없이 평등한 접근권을 누릴 자격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2020년 3월 28일, 미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의 연방 시민권 사무실(Office for Civil Rights)에서 해당 대상 기구에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1557조 및 재활법(Rehabilitation Act) 504조에 따른 연방 법정 의무 및 책임을 상기시키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여타 요점 가운데, HHS는 의료 제공자들이 반드시 “영어 사용이 불편한(Limited English proficiency) 개인에게 자격이 있는 통역사의 이용과 기타 수단을 통해 프로그램 및 정보에 대한 의미 있는 접근권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 의료 기관에 대한 시민권 법 집행에 있어 DFEH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DFEH에서 집행하는 기타 시민권 법 가운데, 당 부는 Unruh 시민권 법령(민법 51조) 및 정부 법전 11135조의 집행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는 주 또는 주 자금 수혜자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업체,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 보호 대상 특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괴롭히거나 불평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병원 및 기타 의료 시설이 포함됩니다. 차별의 피해자라고 생각되는 개인은 DFEH의 조사를 위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주 기관은 자체 계약자, 피수여자 또는 지방 기관 중 하나가 보호 대상 특성을 이유로 누군가를 차별하였거나 일체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혜택에 대한 전면적이고 평등한 접근권을 거부하였다고 생각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반드시 DFEH의 조사를 위해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DFEH에 대한 민원 제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https://www.dfeh.ca.gov/ComplaintProcess/>에서 확인하십시오.

## ■ COVID-19에 관한 DFEH 의료 정보

###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인 편의 제공

#### ■ COVID-19 대유행 동안, 의료 기관은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나요?

예. 의료 제공자가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해당 제공자의 서비스 혜택을 누릴 전면적이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여기에는 의료 제공자와의 소통 능력 및 의료 관리에 대한 접근권이 포함됩니다. 일부 편의는 프로그램의 성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제기하거나 타인의 건강 및 안전에 직접 위협을 제기하는 경우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개인이 편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 제공자는 반드시 해당 개인 또는 그 대리인과 상호적인 프로세스에 참여해 합리적인 편의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 ■ 의료 시설은 장애가 있는 환자가 COVID-19 관련 치료를 포함해 치료 요구 사항과 선호 사항을 소통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보조인의 동행을 허용할 의무가 있나요?

장애가 있는 환자는 통역사 및 특수 보조공학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해 치료와 관련된 요구 사항 및 선호 사항을 소통함에 있어 특정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환자는 가족, 개인 간병인 또는 유사한 장애 서비스 제공자와 같이, 입원 기간에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그들을 보조하거나 요구 사항을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들의 치료 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보조인의 동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개인이 제공자의 서비스 혜택에 대해 전면적이고 평등한 접근권을 누리도록 그러한 보조인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의료 시설이 –상호적인 프로세스에 참여한 후– 과도한 부담, 타인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직접 위협 또는 해당 프로그램의 본질적인 변경 없이, 감염병의 전파를 억제할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반드시 이러한 편의 제공을 허용해야 합니다.

#### ■ 의료 기관은 방문객 및 보조인에 대해 제한 사항을 설정할 수 있나요?

예. COVID-19 대유행 동안 –의료진 및 환자에 대한 감염병 전파 방지가 필수적이고 많은 의료 시설이 가용 자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시설은 장애가 있는 환자에 대한 보조인을 포함해 방문객에 대해 제한 사항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합리적인 제한 사항 가운데, 1회 방문객 수를 제한, 환자의 보조에 꼭 필요한 자로 방문객을 제한, 가능한 질병에 대해 방문객을 선별 검사하고 증상을 보일 경우 이들을 차단, 방문객에게 의료 시설 구내에서 언제든지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도록 요구할 것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지침의 다른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의료 제공자가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해당 제공자의 서비스 혜택을 누릴 전면적이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COVID-19에 관한 DFEH 의료 정보

### ■ 의료 시설이 COVID-19 안전 예방 조치로 인해 환자가 아닌 사람들의 방문을 제한하는 경우, 해당 의료 시설은 반드시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예외 적용을 허용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의료 시설은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방문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 보건 및 안전 우려가 크지만, 장애가 있는 개인이 해당 의료 제공자의 방문 정책을 위반하는 보조인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의료 시설에서 과도한 부담, 타인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직접 위협 또는 해당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변경을 보이지 않는 한 해당 의료 제공자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한 것을 포함해 적합한 예방 조치를 취하면서) 반드시 환자의 요구 사항을 수용해야 합니다. 병원은 반드시 준비된 상태로 획득할 수 있는 방문 정책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일선 직원들은 반드시 현행 방문 정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 의료 시설은 일부 장애에 대해서 예외를 허용하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금하는 “방문 금지” 정책을 이행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의료 시설은 정신 장애 또는 감각 장애와 같은 기타 유형의 장애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지적 장애 또는 인지 장애와 같은 특정 장애가 있는 개인에 대해 전면 예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 어떤 사람을 보조인으로 지정할 수 있고 보조인은 어떤 기능을 제공할 수 있나요?

“보조인(support person)”에는 장애가 있는 개인이 해당 의료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의료 관리에 대해 의미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조할 수 있는 자는 누구나 포함됩니다. 이들은 의사소통, 이동, 접근, 정서적 지원, 개인 관리 및 기타 일상생활 활동에 대해 보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유급 개인 간병인, 가족, 파트너 또는 기타 덜 형식적인 간병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가 있는 환자와 관련된 의사소통 장벽으로 인해 의료진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믿을 수 있는 사람의 대면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료 지시를 이해하거나 따르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가 있는 환자는 믿을 수 있는 보조인이 그들을 보조해줄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장애가 있는 개인이 병상 또는 휠체어로부터 이동, 개인 관리 및 음식물 섭취를 포함해 일상생활 활동에 대해 그들을 도와줄 개인 간병인에 의존합니다. 이들은 개인 간병인과 밀접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의 개인 간병인 대신 병원 직원에게 그러한 친밀한 서비스를 수행하게 하면 (병원 직원이 이용 가능하고 그렇게 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치료와 회복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개인 간병인의 존재는 환자의 신체적 또는 정서적 웰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 시설의 방문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합리적인 편의 제공일 수 있습니다.

의료와 관련해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DFEH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 제기처

공정 고용 주택부(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

dfeh.ca.gov / 수신자 부담 전화: 800.884.1684 / TTY: 800.700.2320

합리적인 편의 제공이 필요한 장애가 있는 경우, DFEH는 청각 장애 또는 난청이 있거나 언어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전화 또는 캘리포니아 중계 서비스(711)를 통해 접수 내용을 문자로 전환하여 도움을 드립니다. 아래 연락처로도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